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6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14.)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이 2022년 4월26일 제정되고, 같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범위와 임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안 제10조)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조 및 안 제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것을 10개 조문과 부칙 제1조와 제2조로 정비하려는 것임.

-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 사항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4조(임무), 안 제5조(경비 지원 등)이며, 현행 조례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여 새로운 조문을 입안한 것은 제명, 안 제3조(적용범위), 안 제5조(경비 지원 등), 안 제6조(지원 중단), 안 제7조(지도·감독), 안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9조(포상), 안 제10조(규칙)이 해당됨.

조문	개요	주요내용	개정사항
제명	제명	“주민자율방범봉사대” → “자율방범봉사대”	제명의 변경
1	목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법률 반영,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내용 추가	개정
2	정의	용어 정의를 근거법률 제2조에 따르게 함.	개정
3	적용범위	적용범위를 법 제4조와 제12조에 따른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로 함	신설
4	임무	(제1항) 자율방범대의 임무 4가지, (제2항) 연합대의 기능 4가지	개정 (현행 제5조 정비)
5	경비 지원 등	(제1항)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야식비, 실비 등 (제2항) 대원수와 실적, 지도·점검결과 등에 따른 지원금 가감 근거 마련 (제3항) 지원금 신청 및 정산 규정 마련	현행 제7조 및 제8조 정비
6	지원 중단	(제1항) 예산지원 중단 및 예산 회수 근거 마련 - 실적없음, 목적외 사용 등 4개 호를 제시 (제2항) 이의신청 근거 마련	현행 제8조제2항을 반영 및 추가
7	지도·감독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행정지도 사항을 반영, 현행 제9조의 “감독 및 평가” 추가 및 변경	신설, 현행 제9조를 추가 및 변경
8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 및 서울시 및 기타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 본 조례를 근거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신설
9	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이 자율방범대원을 포상할 근거마련	신설, 현행 제11조를 정비
10	규칙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근거	신설, 현행 제12조의 조문을 이동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경과조치	경과조치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및 해병전우회 등 포함) 지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어왔는데,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에서 “주민”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덧붙여 자율방범대 관련 전국 230개 조례 운영 중 ‘주민자율방범봉사대’라는 명칭을 제명으로 한 조례는 전국에서 강남구가 유일하여 주민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관련 신고

및 운영 등의 사항은 경찰청과 경찰서¹⁾ 그리고 광역지자체²⁾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지원예산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어 지원금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이 시행되어 향후 국비 또는 광역 서울시비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교부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이에 안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를 엄격히 규정할 경우, 국비 또는 서울시비가 부족하여 같은 사업이나 분야의 예산을 구비 자체재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고자

-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 제10조(교육·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할 경우, “금지” 성격이 강하여 탄력적 대응이 곤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전부개정안	수정안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u>조정</u>)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u>조정할 수 있다</u> .

□ 또한, **안 제9조(포상)**은 구청장과 동장이 자율방범대원 등을 포상할 수 있게 하여 포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과 동격의 지위에 있게 하고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전부개정안	수정안
제9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다만, 법 제11조(포상)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가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임. 이것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법률우위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조문이 임의규정이므로 엄격히 따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는 규정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임.

□ 기타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의 추계가 필요한데, 현재 강남구는 연간 지원예산을 332,749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법령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비 및 서울시비 교부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충실하려 하지만, 다소 본 법이 「지방자치법」 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조례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 및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 현행 법률과 시행령 등이 자율방범대 등의 관리 및 감독 등의 권한은 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도록 하고, 경비 지원 등의 분야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로 치우쳐 있어 엄밀한 검토를 통한 부단한 법률 개정 건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광역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그때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강남구 자율방범대 현황>

(2022.10월 기준)

창단일	방범대	대원수	비 고
1998. 2	23개대	479명	· 미운영(개포1동), 2개대(대치2동, 역삼1동)

동 명	신사	논현1	논현2	압구정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대원수	19	44	15	26	27	18	11	18	32	11	36
동 명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1	개포2	개포4	일원본	일원1	일원2	수서	세곡
대원수	23	21	14	미운영	15	30	31	22	19	26	21

<동별 초소 및 순찰차량 현황>

동 명	초소종류	차량종류	동 명	초소종류	차량종류
신사동	컨테이너	개인	역삼2동	"	전용
논현1동	"	전용	도곡1동	"	전용
논현2동	"	개인	도곡2동	"	도보
압구정동	"	개인	개포2동	"	개인
청담동	"	전용	개포4동	"	전용
삼성1동	주민센터 2층	개인	일원본동	"	개인
삼성2동	주민센터 2층	개인	일원1동	"	개인
대치1동	컨테이너	개인	일원2동	"	개인
대치2동	대치2	"	수서동	"	개인
	해병대	"	세곡동	"	개인
대치4동	"	개인			
역삼1동	역삼1	"			
	역서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8호

제안일자 : 2023.6.14.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를 엄격히 규정할 경우 “금지” 성격이 강하여 탄력적 대응이 곤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정”으로 수정(안 제8조)
- 구청장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과 동격의 지위에 있게 하고 있어 수정(안 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복지원의 금지)”를 “(중복지원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지 아니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법 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u>하지 아니</u> <u>한다.</u></p> <p>제9조(포상) <u>구청장 또는 동장</u>은 지 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법대원과 자율 방법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 ----- ----- ----- <u>조정할 수 있다.</u></p> <p>제9조(포상) <u>구청장</u>----- -----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박다미·안지연·노애자·복진
경·김형대·이동호·강을석·
김진경·김현정·이도희·이성
수·한윤수·전인수·오온누리
·손민기·김형곤·우종혁·김
민경 의원(이상18인)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와 임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부터 제8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법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법 활동 및 범죄 신고**
-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법일

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담 당	행정팀장	동 장	
근무시간	: ~ :														
근 무 자	근무자 : 명										협 조	봉사대장	인		
	인					인							인		
■ 일반현황															
대원수			장 비 현 황									활동인원			
계	남	여	가스 총	무전 기	싸치 라이트	전자 봉	소화 기	핸드 마이 크	장비 보관 함	순찰 함	비 옷	누 계	금 일		
■ 주요활동 상황															
순찰차량					순찰지역(코스)					주요활동상황					
운전자			개인												
차량번호															
유류 사용	유종		휘발유 / 경유 / LPG												
	주유량		ℓ												
소비량		ℓ													
운행 내용	출발	:	도 착	:											
	운행 거리 (Km)	전일													
		금일													
		누 계													
■ 활동실적															
구 분		청소년 선 도	절도범 검거등	우범지역 순찰	질서계도, 쓰레기투기	응급 환자 후송 등	부녀자, 노약자,장애인 등, 안전귀가 조치	캠 페 인 및 기타							
금일	횟수 (건)														
	인원														
누계	횟수 (건)														
	인원														
■ 동향보고 및 특기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박다미·안지연·노애자·복진
경·김형대·이동호·강을석·
김진경·김현정·이도희·이성
수·한윤수·전인수·오온누리
·손민기·김형곤·우종혁·김
민경 의원(이상18인)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와 임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부터 제8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법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법 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법일

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재	담당	행정팀장	동장				
근무시간	: ~ :												
근무자	근무자 : 명					협조	봉사대장	인					
	인		인										
■ 일반현황													
대원수			장비현황					활동인원					
계	남	여	가스총	무전기	싸치라이트	전자봉	소화기	핸드마크	장비보관함	순찰함	비옷	누계	금일
■ 주요활동 상황													
순찰차량				순찰지역(코스)				주요활동상황					
운전자		개인											
차량번호													
유류사용	유종	휘발유 / 경유 / LPG											
	주유량	ℓ											
	소비량	ℓ											
운행내용	출발	:	도착	:									
	운행거리(Km)	전일											
		금일											
		누계											
■ 활동실적													
구분	청소년선도	절도범검거등	우범지역순찰	질서계도쓰레기투기	응급환자후송등	부녀자,노약자,장애인등,안전귀가조치	캠페인및기타						
금일	횟수(건)												
	인원												
누계	횟수(건)												
	인원												
■ 동향보고 및 특기사항													